

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139 |
|------------|-----|

제출일시 : '92. 11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의결주문

- 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안산시 도시개발 지원사업소 직제 설치 ('92. 5. 30) 및 기구인력 증가에 따른 시정조정 위원회 당연직위원 실국장을 4급 사업소장 포함 추가 구성코자 함

3. 주요골자

- 시정조정 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실국장과 4급사업소장을 포함 할수있도록 조례개정

○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2조(구성) ① - ②항(생략) ③ 당연직 위원은 <u>실국장으로</u>하고 위촉위원은 각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 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 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2조(구성) ① - ②항(현행과 동일) ③ 당연직위원은 <u>실국장 및 4급사업 소장으로</u>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 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와 그밖의인사중에서 시장이위촉한다 |

○ 개정조례안 : 별지

4. 주요토의과제

○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개정안 심의

5. 주관 실과의견

○ 안산시 도시개발 지원사업소 직제설치 및 기구인력 증가
추세에 따라 시정의 중요한 사항등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
당연직위원실국장 및 4급사업소장을, 시정조정위원으로 추가
구성

6. 관계조례

○ 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

(별지 1)

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3항중 "실국장"을 "실국장및 4급사업소장"으로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구성) ①~② 생략</p> <p>③당연직위원은 <u>실·국장</u>으로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~⑤ 생략</p> | <p>제2조(구성) ①~② 현행과 같음.</p> <p>③ ---- <u>실·국장 및 4급 사업소장</u> 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~⑤ 현행과 같음.</p> |
| | |